

「장학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19. 12. 19. 개정 판 (시행 2020. 3. 1.) → 2020. 6. 8. 개정 판 (시행 2020. 6. 1.)

바뀜 2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195/compare?from=937&to=984>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3:41:43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구성) 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와 학생장학실행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11-19〉 ① 장학위원회 위원은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전인교육원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학생장학실행위원회 위원은 학생처장(위원장), 복지지원팀장(서기), <u>교무부처장</u>, 예산팀장, 재무팀장,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8-28〉	제6조(구성) 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와 학생장학실행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11-19〉 ① 장학위원회 위원은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부처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u>인성교육원장</u>, 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학생장학실행위원회 위원은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부처장(서기),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8-28〉
제22조(교외장학생의 추천) 교외장학생의 추천은 다음과 같다. ① 교외 장학단체에서 학(부)과 및 인원을 지정하였을 경우, 학(부)과장이 추천한다. ② 특정 학(부)과에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학(부)과 장학생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장학위원장(학생처장)이 선정한다.〈개정 2018-11-19〉 ③ 교외 장학단체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④ 교외장학금이 학교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는 본교 장학기금계정에 예입한 후, 해당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11-26〉	제22조(교외장학생의 추천) 교외장학생의 추천은 다음과 같다. ① 교외 장학단체에서 학(부)과 및 인원을 지정하였을 경우, <u>신청 및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u>〈개정 2020-04-16〉 ② 특정 학(부)과에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u>교외기관의 선발기준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장학위원장(학생처장)이 선발한다. 선발기준이 없는 경우 학업우수자 또는 가계곤란자를 선발한다.</u>〈개정 2018-11-19〉> ③ 교외 장학단체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u>교외기관의 선발기준이 명시된 자료를 확인하고, 「청탁금지법」등 관계법령을 위반여부를 검토한다.</u>〈개정 2020-04-16〉> ④ 교외장학금이 학교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는 본교 장학기금계정에 예입한 후, 해당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11-26〉> ⑤ 교외장학금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u>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한다.</u>〈개정 2020-04-16〉>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조문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장학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구성) 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와 학생장학실행위원회를 둔다.

① 장학위원회 위원은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부처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② 학생장학실행위원회 위원은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부처장(서기),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교외장학생의 추천) 교외장학생의 추천은 다음과 같다.

- ① 교외 장학단체에서 학(부)과 및 인원을 지정하였을 경우, 신청 및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 ② 특정 학(부)과에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교외기관의 선발기준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장학위원장(학생처장)이 선발한다. 선발기준이 없는 경우 학업우수자 또는 가계곤란자를 선발한다.>
- ③ 교외 장학단체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교외기관의 선발기준이 명시된 자료를 확인하고, 「청탁 금지법」등 관계법령을 위반여부를 검토한다.>
- ④ 교외장학금이 학교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는 본교 장학기금계정에 예입한 후, 해당자에게 지급한다.>
- ⑤ 교외장학금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